

【제97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부록】

2004. 1. 31(토)  
제97회임시회제2차본회의

# 심 사 보 고 서

-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-

## 자 치 행 정 위 원 회

##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4. 1. 20. 제 천 시 장  
나. 회 부 일 자 : 2004. 1. 26.  
다. 상 정 일 자 : 2004. 1. 28.(제97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)

### 2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과장 김재식)

#### 가. 제안이유

- 중앙·의림·명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를 개소, 이전함에 따라 사무소 위치를 변경하기 위함.

#### 나. 주요골자

- 제2조(위치)중 중앙·의림·명동사무소의 위치를 제천시 중앙로2가 26-1번지로 변경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이후준)

#### 가. 법적검토

-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조(사무소의소재지)제1항에서 "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구 및 읍·면·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에 의하고,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"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위법의 위임범위 내에서 개정하는 것이며,
-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제천시 공고 제733호로 입법예고(2003. 12. 11~ 2004. 1. 3)를 실시하였으며,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 19규정에 의거 2004. 1. 15 제천시조례규칙심의회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절차를 준수하여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됨.

## 나. 행정적 검토

-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법정동을 통합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(2003. 7. 7 조례공포)하여 전 의림동사무소를 중앙·의림·명동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으며, 주민자치센터의 개소로 인해 사무소가 협소하여 주민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, 사무소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됨.

## 4. 질의답변 요지

“ 없 음 ”

## 5. 소수의견

“ 없 음 ”

## 6. 토론요지

“ 없 음 ”

## 7. 심사결과

“원안가결“

## 8. 심사보고 붙임서류

-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부